[別表의1] <改正 1963·6·8, 1970·1·1>

住居地域안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

(1) 別表의2와 別表의4에 해당하는 것. 다만, 別表의4(1)중 1 내지 4 및 12의 物品, 可燃性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貯藏 또는 處理에 供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原動機를 사용하는 工場으로서 作業場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5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

(3)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

1. 容量 10릿터이상 30릿터미만의 아세찌렌까스發生器를 사용하는 金屬工業
2. 出力의 合計가 0.75킬로와트미만의 原動機를 사용하는 塗料의 뿜질
3. 原動機를 사용하는 2臺이하의 硏磨機에 의한 金屬의 乾燥硏磨(工具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콜크, 에보나이트 또는 合成樹脂의 粉碎 또는 乾燥硏磨로서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5. 製材, 裁縫機, 織捻絲, 組紐, 編物, 製袋 또는 줄칼날 세우기로서 出力의 合計가 0.75킬로와트이상의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6. 印刷, 製針 또는 石材를 쪼개는 일로서 出力의 合計가 1.5킬로와트이상의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7. 印刷用 平版의 硏磨
8. 糖衣機를 사용하는 菓子의 製造
9. 原動機를 사용하는 씨멘트製品의 製造
10. 燃線, 쇠그물의 製造 또는 直線機를 사용하는 金屬線의 加工으로서 出力의 合計가 0.75킬로와트이상의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11. 出力의 合計가 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原動機를 사용하는 製粉
12. 原動機를 사용하는 魚肉의 練製品의 製造

(4) 바닥面積의 合計가 50平方미터이상의 自動車 車庫(建築物에 附屬하는 것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都市計劃으로 決定된 것을 제외한다)

(5) 演藝場 또는 觀覽場

(6) 캬바레·舞蹈場 기타 이와 類似한 用에 供하는 建築物

(7) 倉庫業을 經營하는 倉庫